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3-4판

2022. 5. 13.



중앙방역대책본부

I. 사업개요	1
□ 법적근거	1
□ 지원조건	1
II. 지원내용	1
□ 지원대상자	1
□ 개정지침 적용	1
□ 지원기준	2
III. 신청방법 및 절차	4
□ 신청방법	4
□ 온라인 신청 및 처리	5
□ 처리절차	6
IV. 행정사항	8
【 별첨. 관련 서식 】	
1. 생활비지원 신청서	10
2. 위임장	11
3. 생활지원비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12
4. 임원·격리자 명단 통보 서식	13
5.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조회 회신	14
6.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15
[참고1] 관련 법령 및 고시	16
[참고2] 임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18
[참고3] 임원·격리 통지서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3-4판 주요 개정사항

목차	3-3판	3-4판 개정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보조금24) <신설> ☐ 온라인 신청 및 처리 ☐ (시행일) '22.5.13.(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이후) ☐ (적용대상)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오프라인 신청) ①'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확진자+접촉자), ②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 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③공동격리자(공동 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④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외국인 ☐ (신청 시스템)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본 메뉴에서 맞춤 안내* 제공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상의 확진자 정보가 자동 연계되어 보조금24의 '나의혜택' 메뉴를 통해 신청 안내(22.5.12 이전 격리해제자 등 그 외 격리자는 신청 접근 불가) ☐ (처리시스템 전환) 온라인 신청 개시 이후부터 '22.5.13. 이후 격리 해제자의 신청은 보조금24 연계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 (온·오프라인 신청 불문) -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신청*도 담당자 직권 입력을 통해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가능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의 신청 건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연계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 자동 채움 가능 - 다만, '22.5.12 이전 격리 해제자 등에 대해서는 '행복e음'을 통해 처리 ☐ (신청방법) 맞춤 안내가 제공된 민원인('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이 보조금24 (정부24 하위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 시 주민정보 및 격리정보 (세대 내 기타 가족 확진자 포함)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 제공(→민원인 기재 불필요)
행정사항	☐ (읍·면·동)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접수, 행복e음 등록	☐ (읍·면·동)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접수, 행복e음 또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서식	[서식 제1호]	[서식 제1호]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정

I

사업개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5호(2022.3.14.)

□ 지원조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보조율 50%(단, 특별재난지역 70%))
 - 지원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국비 100% 집행(구분하여 정산)

II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개정지침 적용

- '22. 3. 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예시) 검체채취 3.15,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3.16,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3.16
→ 3.16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22. 3. 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

-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
- *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개별 격리자를 별도 가구로 인정

(예시1) 실제 4인 거주 가구로 4인 모두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주민등록표상 동거 3명(부, 모, 자녀1),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자녀2)
→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2건, 부 등 3명 세대 1건, 자녀2 세대 1건)

(예시2) 외부인(친지 포함)이 돌봄을 위해 다른 가구로 와서 공동격리된 경우

- 노인·장애인·아동 등 격리 시 돌봄을 위해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격리 통지를 받아 함께 격리된 경우 등
→ 해당 돌봄 수행 격리자는 돌봄을 제공받은 가구와 별개로 신청
☞ 돌봄 등 인력이 적정 입원·격리 통지서(시스템상 기록을 포함함)를 받은 경우라면 돌봄의 사유, 목적, 자격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음(즉, 격리통지 사실만 확인하여 일반 격리자와 동일하게 처리)

-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② 해외입국 격리자

-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기간)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즉,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예시1)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5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5.~4.10.)
- 수동감시자③이 4.6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6.~4.11.)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①, ②, ③)

⇒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지원액 15만원 지원

(예시2)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8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8.~4.13.)
- 수동감시자③이 4.10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10.~4.15.)

☞ ①(4.1.~4.6.), ②+③(4.8.~4.15.) 별건으로 신청·지급

① 격리자 1인으로 10만원, ②+③ 격리자 2인으로 15만원 지급

Ⅲ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 격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격리통지서 요구 지양(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통지 캡처본 등을 통해 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신설) 온라인 신청 및 처리**

- **(시행일)** '22.5.13.(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이후)
- **(적용대상)**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오프라인 신청)
 - ①'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확진자+접촉자), ②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③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④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신청 시스템)**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본 메뉴에서 맞춤 안내* 제공
 -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상의 확진자 정보가 자동 연계되어 보조금24의 '나의혜택' 메뉴를 통해 신청 안내('22.5.12. 이전 격리해제자 등 그 외 격리자는 신청 접근 불가)
- **(처리시스템 전환)** 온라인 신청 개시 이후부터 '22.5.13. 이후 격리 해제자의 신청은 보조금24 연계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온·오프라인 신청 불문)

-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신청*도 담당자 직권 입력을 통해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가능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의 신청 건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연계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 자동 채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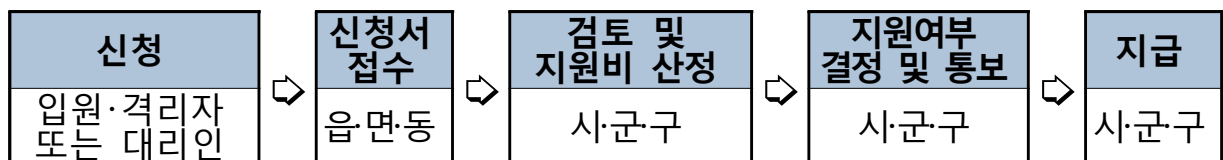
- 다만, '22.5.12. 이전 격리 해제자 등에 대해서는 '행복e음'을 통해 처리

구분	신청		신청내용 처리 (지원결정 등)		보조금 집행 (지급)
현행	오프라인	⇒ 자동연계 x	행복e음 시스템 (신청내용 수기입력)	⇒ 자동연계 x	e호조 시스템
개선	온라인 (보조금24)	⇒ 자동연계 o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신청내용 자동연계)	⇒ 자동연계 x	e호조 시스템

- (신청방법) 맞춤 안내가 제공된 민원인('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이 보조금24(정부24 하위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 시 주민정보 및 격리정보(세대 내 기타 가족 확진자 포함)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 제공(→민원인 기재 불필요)

□ 처리절차



※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오프라인·온라인 주요 변경사항

업무	현행 (오프라인 접수+행복e음 처리)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접수+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처리)
신청방법	오프라인 * 일부 지자체 이메일 접수 중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분에 대한 공무원 추가입력 가능
신청자격	지원대상 여부 사전확인 불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상에 등록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그 외 신청 불가)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접수알림	구두, 전화 문의	시스템 문자 발송 * (국민) 신청·접수지급 완료 등 진행상태 안내 * (접수공무원) 처리할 신청서가 있음을 안내 새울시스템과 SSO연계(접수시스템으로 이동 용이)
접수서류 입력	공무원이 행복e음에 수기 입력	통합관리시스템상 신청정보 자동 축적
격리정보 확인	수작업 확인 * 신청인 제출 격리통지(문자 등) 확인 후 보건소 등록 격리정보 재확인	별도 확인 불필요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정보 자동 연계(기재란 자동 채움)
세대원 확인 및 동거가족 격리 여부 확인	행복e음 주민 조회를 통해 세대원 정보 확인 가능 * 동거가족 격리 여부는 신청서 기재사항 의존	세대원 정보 자동 입력, 세대원 중 확진자 정보 자동 입력 * 동일세대 가족정보 자동 채움 기능 제공
첨부서류	격리통지(문자), 가족관계(필요시), 통장사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만 첨부
계좌유효성 검증	행복e음 입력 시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단계에서 검증 가능 * 통장사본 첨부 불필요
배제기관 조회	별도 확인	건강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직장 가입자 기관명 표출
유급휴가비용 중복체크	공단제공 지급정보를 주기적으로 행복e음 업로드(신청 단계 표출)	15일 단위 지급정보 데이터 매칭 중복여부 제시
지원결정	행복e음에서 지급결정 * 복수 신청자 일괄 결정도 가능	접수정보를 통해 적정여부 심사 * e호조 지급완료 후 시스템에 처리결과 입력(문자통보) * 일괄처리 방안 마련 중
지원금액	담당자가 산정, 입력	신청 시 확진자 수에 따라 예상금액 자동 입력(확인 후 조정 가능)
신청정보 엑셀다운로드	행복e음 입력정보 기반 내려받기 가능	보조금24 신청내역 내려받기 가능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구분 표시됨
지급처리 자동연계	불가 * e호조 시스템에 별도 입력 필요	불가 * e호조 시스템에 별도 입력 필요

- (시·군·구) 격리 통지 단계에서 신청방법 및 배제대상 안내
 - * [참고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등 활용
- (읍·면·동)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접수, 행복e음 또는 공공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 (주체) 읍·면·동 업무담당 공무원(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 포함)
 - 신청대상자 확인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를 원칙으로 함
 - * 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일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해 보건부서 자료* 제공 협조 요청
 - * 보건소 통보 서식 [서식 제4호]
- (처분부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된 사람과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의 정보 통보(→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 피처분자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일시, 처분일시, 처분사유 등)와 처분절차 진행 중인 자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행내역)
- (보건부서) 생활지원비 지급 결정을 위한 입원·격리자 명단을 생활 지원비 지원부서에 통보[서식 제4호] ☞ '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통보 不要
 - * 유급휴가비용 지급결정 자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송부한 요청서에 격리 기간을 표시하여 회신[서식 제5호]
 - 방역수칙 위반자* 통보는 해당자에 대해서만 표기해서 제공
 - * 방역수칙위반은 당해 격리기간 중 발생한 위반에 한하며, 당해 격리와의 직간접적 인과관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 지급대상자 전체 명단에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모두 표기할 필요 없음
 - ☞ 지급대상자 명단 통보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인으로 갈음할 경우, 방역수칙위반자 명단은 개별적으로 별도 통보
- (생활지원부서) 지원 결정 및 지급
 - ※ (주체) 시·군·구 업무담당 공무원(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 포함. 단, 최종 결정·지급 권한은 공무원으로 한정)

- 보건소 통보명단, 주민등록 정보 등을 통해 가구 내 격리자 수 적용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서식 제3호] 활용
 - 처분절차 진행 중인 건을 신청·접수 받은 경우에는 처분여부 결정 시 까지 지급 보류하고, 처분사실이 지급 이후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 * 해당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
 - 유급휴가비용 지원심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불이행자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 포함) 명단은 시·도(생활지원부서)를 통해 질병 관리청에 수시 통보
- (시·도 생활지원부서) 시·군·구가 제출한 불이행자 명단을 신속히 질병관리청에 전달[서식 제4호]활용

관련 서식

생활지원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확진자 또는 격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격리장소 ☐ 입원 (병원) ☐ 생치 (생활치료센터) ☐ 자가 (☐ 재택환자(명) ☐ 동거인 격리자(명) ☐ 기타(명))						
입원· 격리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입원·격리 통지기간	격리구분	지원제외대상 여부
						☐ 입원 ☐ 생치 ☐ 자가	☐ 해당 ☐ 미해당
						☐ 입원 ☐ 생치 ☐ 자가	☐ 해당 ☐ 미해당
						☐ 입원 ☐ 생치 ☐ 자가	☐ 해당 ☐ 미해당
						☐ 입원 ☐ 생치 ☐ 자가	☐ 해당 ☐ 미해당
참고	※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대상 ①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입금 계좌	예금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신청인명의)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 본인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가구 내 격리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V체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가구원 포함)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 * 업무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V체크)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가구원 포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에 의한 생활지원비의 신청 적격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의 수집·활용 및 제3자의 기관(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행정안전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업무 종료시 제공 받은 개인정보 폐기	확인 (V체크) []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 재활용품)

[서식 제2호]

위 임 장

위 임 장				
위 임 자 (확진자 또는 격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 임 명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의 건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상기 본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신청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위임 받은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 재활용품)

[서식 제3호]

생활지원비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신청일	신청자(입원·격리자)						가구 내 격리자1			가구 내 격리자2			...			예금주	지급계좌 (은행명)	지급대상 입원· 격리자수 (명)	지급액 (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입원격리 시작일	입원격리 종료일	격리 일수	관계	이름	주민등록 번호	관계	이름	주민등록 번호	...	...	...				
1	서울	종로구	02.17.	이몽룡	000000- 0000000					배우자	성춘향	000000- 0000000	자	이길동	000000- 0000000				이몽룡	농협	3	1,002,400

※ ① 입원(격리) 대상(Y)인 가구구성원의 경우만 주민등록번호와 입원(격리) 일수 기재
② 지급대상 입원·격리자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중 가구 내 입원·격리자 수를 기재

[서식 제4호]

입원 · 격리자 명단 통보 서식 : 엑셀로 작성

연번	성명	생년월일	국적	행정동	주소	연락처	격리구분 (확진자 or 접촉자)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해외입국 격리자(Y/N)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조회 회신

(엑셀로 작성)

귀 연금공단이 조회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조회요청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제출) 격리통지서		보건소 확인		해외입국 격리자 (Y/N)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회신기관 : ○○○시군 ○○○보건소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민간 사업장, 공공기관 공통)

사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격리기간 (근로자)	입원·격리시작일	입원·격리해제일

우리 기관은 위 근로자의 입원·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나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공가 등)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 향후 위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관(업체)명 :

(직인)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노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 ①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삭제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시행 2022. 3. 1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5호, 2022. 3. 14., 일부개정]

제1조(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
2.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 단,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제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2-5호, 2022. 3.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 통지된 입원·격리자부터 적용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 다만, 제1호 단서규정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⑤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통장사본 ⑤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입원·격리 통지서

[] 입원 · [] 격리 통지서

- 20 -